

착공연기신청서

• 어두운 란(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	일
신청인	건축주			
	전화번호			
	주소			
대지위치		지번		
허가(신고)번호		허가(신고)일자 년 월 일		
신청내용	착공예정일자 년 월 일			
	연기사유			

「건축법」 제11조제7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건축주 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청안내			
제출하는 곳	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	처리부서	건축허가(신고)부서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	원
근거법규			
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14조 제2항	• 건축주가 공사착수시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		
유의사항			
「건축법」 제11조 제7항 단서	• 공사착수기간연장은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, 연기된 기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됩니다.		
작성방법			
• 착공예정일자 : 연기하고자 하는 착공예정일자를 기재합니다.			
• 연기사유 :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.			